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지난해 10월경 손해보험상품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됨
 -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생명보험 약관이 '재해'를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우발·외래적 사고 및 ②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열거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상해'를 보장대상으로 함
 - '급격한 사고'란, 예측불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함
 - '외래적 사고'란,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으로 상해 발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음을 뜻함
-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세균 등 미생물이 체내로 침투해 감염되는 등 건강이 훼손된 경우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됨
 -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만 외래성을 충족한다거나, 일상적 침입경로에 의한 감염은 상해에서 배제된다는 견해들이 있는 반면, 일응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함
 -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급심에서는 일본뇌염 사망의 상해사망 여부에 대해 다루어진 사례들에서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음
- 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지만, 일상적 침입경로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면역력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상해의 외래성 등을 부정한 점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
- 병원균 등의 외부 침입에 의한 감염병이 상해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 향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해의 각 요건의 세부적 판단기준이 정비·확립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지난 2020년 10월경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¹⁾이 있었음
 -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의 구성요소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판단기준에 관해 실시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음
 -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2020년 11월경 확정되었음
- 위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명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법정감염병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²⁾하고 있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³⁾
 -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많은 경우 동일·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⁴⁾ 양자는 담보 방식과 요건이 상이함
 - 생명보험 약관의 보장대상인 '재해'는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 및 ②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의 감염병으로 열거된 반면, 손해보험 약관의 보장대상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⁵⁾에 입은 상해'라고만 규정됨
-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생명보험은 보장대상인 재해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전염병을 포함하고 있고, 손해보험과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함
 - 코로나19 감염이 생명보험 약관의 보장대상인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손해보험 약관의 보장대상인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 본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없고, 달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체내로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병이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바,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상해의 각 요건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정리한 다음, 감염병의 상해 해당 여부와 관련된 국내 논의 및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1)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2)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음

3) 뉴스핌(2021. 1. 5),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을 참조바람(<http://m.newspim.com/news/view/20210105000207>)

4)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p. 203을 참조바람

5)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신체에 포함함



2. 손해보험에서 '상해'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급격성

- 상해는 '급격하게 일어난 사고'일 것을 요하나,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시간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지, 피보험자의 예견가능성 내지 불가피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⁶⁾
 - 시간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견해는 급격성을 보험사고의 원인으로부터 그 결과인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즉 예측불능의 사고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함⁷⁾
 -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거나 일정 기간을 경과하며 강도를 더해가는 사고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허약이나 질병 등 자연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함
 - 반면 이를 예견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⁸⁾
 - 나아가 피보험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고의 원인 내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었다면 급격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⁹⁾
 - 또 다른 견해로 급격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고가 완만하게 연속하여 발생하는 것이면 당연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연성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함¹⁰⁾
- 아직까지 급격성의 의미에 관해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개 급격성이 인정되므로 급격성 존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짐작됨
 - 하급심에서는 급격성의 의미를 설명한 사례가 있으며, 시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판례가 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부산고등법원은 주취상태로 잠을 자다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사건에서 급격성 판단에 예견가능성과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는 듯한 태도¹¹⁾를 보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상해의 급격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시간적 요소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함¹²⁾

6)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p. 206을 참조바람

7) 김성태(2002), 『보험법강의』, 법문사, p. 862를 참조바람

8) 양승규(1999), 『보험법』, 삼지원, p. 486을 참조바람

9)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p. 206을 참조바람

10) 최기원(2002), 『보험법』, 박영사, p. 633을 참조바람

11) "급격하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 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뜻"한다고 함(부산고등법원 1998. 5. 22. 선고 98나130 판결)

12) '급격성'은 반드시 사고가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함(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2. 우연성

-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를 ①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주관적 측면), ②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객관적 측면)라고 설명함¹³⁾
 - 주관적 측면과 관련하여 ‘예견’이라는 부분이 고의를 의미하는지, (중)과실을 포함하는지 판례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중과실이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우연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주관적 측면을 고의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넓게 보지는 않고 있음¹⁴⁾
 - 예컨대, 술에 취한 피보험자가 지하철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과음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음¹⁵⁾
 -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 사고라는 것은 우연성의 객관적 측면을 가리키나, 판례상 문제된 경우는 드물며, 학설상으로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¹⁶⁾
- 따라서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기고 그 결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인은 우연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해 지하철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거나, 병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교량 난간을 넘어 강으로 투신하는 등의 사건에서 우연성을 인정하고,¹⁷⁾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결과까지 예견하고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음¹⁸⁾

3. 외래성

- 외래성이란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으로 손해 발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 통설임
 - 대법원 역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라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¹⁹⁾
 - 예컨대,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외래

1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14)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분명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음(한기정(2018), 『보험법』, 박영사, p. 799)

1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16) 한기정(2018), 『보험법』, 박영사, pp. 799-800을 참조바람

1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판결 등

1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1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5728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성을 충족하지 못함²⁰⁾

- 일견 외래성 판단기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나,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등 미생물이 외부에서 신체로 침투하여 감염증 등 건강을 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래성을 충족하려면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의 사고’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바²¹⁾ 아래에서 상세히 보기로 함



3. 감염병의 ‘상해’ 요건 충족 관련 논의

-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등 미생물 침투에 의해 감염병 등 건강이 훼손된 경우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됨
-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병원균이 매개물에 의해 외부로부터 급격·우연하게 신체에 침입하여 신체를 손상시키므로 일응 상해 보험사고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²²⁾
 - 일본뇌염이나 광견병 같이 곤충,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은 물론, 코로나19 또한 병원균이 감염자의 침을 매개로 외부로부터 급격·우연하게 신체에 침입하여 신체를 손상시킨 것으로 상해의 요건을 상당히 충족한다는 것임
 - 다만,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보험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라 함²³⁾
- 반면, 이를 상해로 보게 되면 단순한 감기나 무좀과 같은 질병까지 모두 상해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건강 훼손의 경우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
 - 이 중 한 견해는 미국의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외에 외래적이고 가시적인 사고일 것을 요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의 사고’를 외래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함²⁴⁾
 - 또 다른 견해는 특소포자충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실명은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침, 호흡 또는 단순 접촉에 의한 감염은 물론, 일본뇌염과 같이 모기에 물리는 경우처럼 상해가 있더라도 감염 외에는 가치가 없는 손상이어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상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²⁵⁾

20)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p. 207을 참조바람

21)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전주지방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080 판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083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됨)

22) 맹수석(2020),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구』, 제17권 제1호, pp. 184~185를 참조바람

23)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코로나19가 상해와 질병의 개념적 요소에 모두 해당되는데, 약관이 보장대상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맹수석(2020),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구』, 제17권 제1호, p. 185)

24) 임동섭(2017),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pp. 207~208을 참조바람

25) 최병규(2017),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 435~437을 참조바람

- 이와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로는 일본뇌염으로 인한 사망의 상해사망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망 관련 사건이 있음
- 피보험자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이르게 된 것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이로 인한 사망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은 이를 부정²⁶⁾한 경우가 더 많으나, 긍정적인 사례²⁷⁾도 발견됨
 - 광주지방법원은 ① 모기에 물린 것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피부 점막 손상에 불과하고, 바이러스의 침투 자체는 상해가 아니며, ②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감염에 이른 일련의 과정 역시 다음의 이유로 상해로 볼 수 없다함
 - 일본뇌염에 감염되어도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뇌염으로 진행되지 않고 환자 대부분이 노약자임을 볼 때 뇌염에 이르게 된 데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외래성 부정)
 - 바이러스 감염 후 약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시간적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일본뇌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급격성 부정)²⁸⁾
 -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2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임(우연성 부정)
 -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일본뇌염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특별한 매개체인 일본뇌염 모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되었고(외래성 인정),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상해사망에 해당된다고 봄
- 앞서 언급된 코로나19 감염 사망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외래성을 부인하면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외래의 사고'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이라 전제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보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음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병원체와 같은 침입경로(일상생활 중 감염)를 통해 전파되었고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한 감염 등 감염과정에 외래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증상부터 경증,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바이러스 침투 후 패혈증에 이르는 데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바, 피보험자는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방법상 법정감염병도 재해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피보험자 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함
 - 상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본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

26)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5643, 656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단203538 판결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78050 판결

28) 광주지방법원은 급격성을 "보험사고의 원인으로부터 보험사고의 결과인 상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시간적 요소를 중시하였음

- 학설과 판례가 감염병의 상해해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감염병을 상해로 해석하는 경우 질병과 상해 간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주로 '외래성의 부재'에 근거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반대로 일상적 침입경로가 아닌 '특별한 매개체'를 통한 감염, 예컨대 수혈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바이러스가 신체에 주입되는 등의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4. 결어

- 바이러스나 세균의 외부 침입으로 인한 감염병이 개념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장대상을 별도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 상해면 모두 담보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 약관하에서 감염병을 '상해'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일상적 침입경로를 통한 감염병에 외래성을 인정한다면, 계절성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의 사고'가 되어버리는 난점이 있음
-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함
 - 감염병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광견병, 파상풍처럼 상해가 선행되는 경우, 일본뇌염모기처럼 경미한 피부손상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기침, 호흡 등 일상적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례에 주목하고, 향후 활발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경우에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해의 각 요건의 세부적 판단기준이 정비 및 확립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